

APEC ARCHITECT PROJECT

제2차 임시이사회 · 제1회 중앙이사회

제2차 임시이사회 겸 제1회 중앙이사회가 2005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동경의 Mita Kaigisho(삼전공용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APEC 21개 회원국 중 미국(8), 일본(10), 대만(11), 태국(4), 멕시코(3), 뉴질랜드(3), 필리핀(7), 호주(3), 캐나다(2), 중국(5), 홍콩(4), 말레이시아(4), 싱가포르(2), 한국(3) 등 14개국에서 64명이 참석하였고, 한국과 싱가포르는 이사국이 아닌 옵서버로 참석하여 실질적인 이사국 참가국은 12개국이다.

한국에서는 건교부 행정사무관 송길수 사무관, 우리협회의 이근창 부회장과 신춘규 국제 부위원장이 참석하였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설립 기본정신은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국가간 기술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후 8개국(칠레, 홍콩, 멕시코, 파파뉴기니아, 페루, 러시아, 대만, 베트남)이 추가로 입회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이다.

APEC Architect Project는 APEC 산하기구인 인적자원개발 Working Group(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회원국간의 건축서비스를 수출하려고 하는 건축사에게 현존하는 장애를 없애고 건축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이동성(MOBILITY)을 촉진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한편 APEC Architect Project는 2001년 호주

의 브리즈번에서 발족되어 제4차의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와 제2차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uncil)에 걸쳐 2005년 중앙이사회(The Central Council)로 탄생하게 되었고, 제4차 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된 운영 매뉴얼(Operations Manual)에 의해 각 회원국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격소지자에 대해 상호 인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4회에 걸친 추진위원회에 이어 연속선상에 있는 안건을 다루었지만, 특히 한국의 심사 위원회(Monitoring Committee)의 승인, 중앙이사회의 발족과 APEC Architect Project에 필요한 서류의 양식과 진행절차에 관한 논의 그리고 APEC Architect Register의 개시일 등 실질적이고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다루어졌다.

본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임시이사회 구성 (ITEM 4)
 2. 임시 Monitoring Committee에 대한 승인 (ITEM 5)
 3. APEC Architect 중앙이사회 재정(ITEM 6)
 4. APEC Architect 등록 데이터베이스, Monitoring Committee 웹 사이트(ITEM 7.1)
- 중앙이사회는 각국의 Monitoring Committee Web site에는 다음사항을 내포하기로 동의하였다.
- 각 Economy내의 건축사 현황에 대한 간략한 소개
 - 각 Economy의 APEC Architect 자격요건을 충족한 건축사의 리스트와 접근 방식
 - APEC Architect 로서 등록을 위한 정보 및 신청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 다운로드
 - 회원국 중 타 Economies에서 온 APEC 건축사에 대한 Home Economy의 인정 조건에 대한 설명

중앙이사회는 각 Economy에 의해 APEC Architects에 주는 등록번호에는 아래와 같이 합의한 각 Economy를 표시하는 약어와 5개의 숫

자로 구성하기로 동의했다.

(Australia - AU, Canada - CA, People's Republic of China - CN, Hong Kong China - HK, Japan - JP, Republic of Korea - KR, Malaysia - MY, Mexico - MX, New Zealand - NZ,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PH, Singapore - SG, Chinese Taipei - CT, Thailand - TH, United States of America - US)

5. 중앙이사회 Web Sites 승인(Item 7.2)

중앙이사회는 현재 제정하여 운영 중인 Web Site의 목차와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그대로 운영기로 합의하였다.

6. 건축사로서의 7년의 실무기록에 대한 요구 (Item 8.1)

중앙이사회는 이전의 현재성 요구 사항이었던 실무책임에 있는 위치에 최소 2년간은 APEC Architect 신청 직전에 있어야 된다는 항목을 '신청 직전 적절한 실적이 2년 이상 있어야 된다'로 수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부록2에 첨부된 7년의 실무 경험을 위한 기록에 대한 양식을 최소한의 양식으로 하고 각국의 특성과 편의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는데 합의하였다.(일본에서 사례 제시)

7. APEC Architect 로서의 등록을 위한 신청 (Item 8.2)

중앙이사회는 부록3에 첨부된 '등록을 위한 신청서'의 초안을 최소한으로 수용하는 것을 동의함(일본 신청서 사례 제시)

8. APEC Architect ID CARD와 증명서(Item 8.2)

APEC Architect ID CARD와 증명서는 표준 설계에 의하여 중앙이사회를 대신하여 각국의 Monitoring Committee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하고, ID CARD와 증명서에는 건축사의 이름, Home Economy 이름, APEC Architect의 등록 날짜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9. Operations Manual(Item 8.4)의 인준

각 Economy는 현재 작성된 Operation manual을 기초로 하여 사용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차기 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하였다.

10. 서류에 대한 표현과 언어(Item 8.5)

각 Economy는 각국의 언어를 사용하는데 자유로워야 하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하는 자료 등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11. 정부로부터의 지원서신(Item 9)

각 정부로부터 Monitoring Committee의 지원 확보를 위한 서신이 초안으로 제시 되었으나 각 Economy의 정부와의 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12. APEC Architect 등록의 시작(Item 10)

각 Economy가 APEC Architect 등록 신청은 지금부터 받을 수 있으나 개시 일자를 통일하기로 합의하고 그 날짜를 2005년 9월 19일로하기로 결정하였다.(참고 : 2005년 9월 17일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APEC Architect Project를 추진하기로 한 제1차 모임을 갖은 후 4주년이 되는 날이나 공교롭게 토요일이 되어 다음 월요일인 9월 19일로 정함) 각 Economy의 Monitoring Committee의 Web site도 이 시점까지는 준비하기로 하였다.

13. APEC Architect Framework 의 기금과 재정운영(Item 11)

1)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Economy)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엔 회의 진행에 대한 경비를 대표단 등록비로 분담하기로 하였다.

2) 사무국은 참여하는 국가들이 미래의 재정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과 자료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4. 중앙이사회 Operations Program(Item 12)

1) 참여국은 APEC Architect Framework의 효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전 회의에서 채택된 요약결론에 대해 가능한 빨리 수용하기로 하였다.

2) 모든 Monitoring Committee는 Operations Manual의 제2장에 기록된 APEC Architect 기준과 정책에 모순이 될 만한 직업인 증에 대한 요구에 대한 어떤 변경도 중앙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3) 사무국은 이런 변경을 각국에 열람시키고, 필요하다면 중앙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율한다.

4) 각 Monitoring Committee는 사무국이 결정한 날짜로부터 6개월마다 간략한 Survey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무국도 이를 모든 국가에 열람시켜야 한다.

15. 한국과 싱가포르에 대한 조건

1) 한국과 싱가포르는 Monitoring Committee를 구성한 것을 사무국에 통보 한다.

2) 양국은 Survey Application과 부가적인 자료를 완성하고, 중앙이사회의 이사 후보를 선임하여 사무국에 통보한다.

3) 사무국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요구된 서류가 완전하게 접수되었을 때 중앙이사회의 공인된 Monitoring Committee에 한국과 싱가포르가 수용되었음을 통보한다.

4) 사무국은 모든 자료를 공인된 Monitoring Committee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16. Summary Conclusions(Item 14)

중앙이사회가 2년마다 열리므로 사무국은 결론요약을 3개월 이내 서명하여 각 Monitoring Committee에게 배포하고, 그리하여 동경중앙이사회 결정이 유효하게 되도록 하였다.

17. 행정조항 - 사무국(Item 15)

차기 사무국은 중간에 신청이 있지 않는 한 차기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18. 중앙이사회의 차기 일정(Item 16)

차기 회의는 2006년 5월 또는 6월 중 Mexico City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날짜는 멕시코 측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참고) 캐나다에서 중앙이사회 개최를 신청했으나 멕시코에게 양보함.

앞으로의 과제

APEC Architect Project는 올해 동경의 제1회 중앙이사회에 12개국이 참여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최소기본조건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아직 각국의 APEC Architect를 받아들이는 최소조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UIA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축사의 상호인정 지침보다는 각국의 등록건축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실무 경력에 따라 상호인정의 바탕을 두는 등 많이 완화된 조건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이미 시장개방의 일환으로 외국건축사가 국내건축사와 공동으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곧 외국의 대형 건축사사무소가 한국 내 지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APEC Architect Project에 의한 회원 상대국의 경제적 수준과 시장의 크기를 고려 할 때 회원국간의 다자 협상에 의해 서로 개방이 되더라도 시장 개입에는 다소 마찰이 예상되지만 커다란 피해 볼 것은 없다고 사료된다. 이 시점에 우리의 시장과 상대국의 시장 크기를 조사하여 득과 실을 꼼꼼히 따져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단, 중국과 미국, 일본 주요 경제 국가들이 APEC 건축사 Project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내에서 활동 할 수 있는 외국 건축사를 APEC Architect에게만 한정 지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규제방안을 만드는 개연성이 예측되고, 현재 UIA에서 마련하고 있는 WTO하에서 다자간 건축사 상

호 인정 관련된 협상에 있어서도 APEC Architect Project에 이사국으로서 유리한 위치 확보를 가질 수 있다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이라고 가정 할 때 한국도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급적 많은 국내 APEC Architect를 배출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특히, 앞으로 중앙이사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운영 지침서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고 중앙이사회의 모든 회원국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득해야 가입할 수 있는 반면,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동안의 준비과정에 오히려 참여한 사실이 참작되고,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의 강력한 지지에 힘입어 Monitoring Committee의 설치, Web site 작성 등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사무국에 보고함으로써 자동 가입이 되도록 절차를 일단 간편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회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여 가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협회에서는 해당 행정 기관과, APEC 관련 부처와 국내 건축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사안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Monitoring Committee를 만들고, 요구된 Web Site 등의 제작 및 자료 등을 준비하여 APEC Architect Project의 이사국으로서 승인을 득하고 국제적인 경쟁 입지를 마련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협회에서는 내부 의견을 수렴 한 후 의견이 합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국내건축사들이 APEC Architect로서의 등록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근창 / 본협회 부회장, 신춘규 / 본협회 국제 부위원장)



(왼쪽 : 이근창, 오른쪽 : 송길수)



(왼쪽 : 신춘규)